

1. 개정이유

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 시 「선박안전법」의 검사 제외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 시 선박검사 규정 명확화(제9조)

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 시 「선박안전법」 적용 대상 선박만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~ 7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선박검사증서(「선박안전법」 제3조에 따라 「선박안전법」을 적용 받는 선박에 한한다)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 등) ① (생략)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선박검사증서</u>	제9조(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선박검사증서</u> (「선박안전법」 제3조에 따라 「선박안전법」을 적용받는 선박에 한한다)